

대구예술대학교 기자재선정및관리위원회규정

(개정 2004.03.18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의 각 전공 및 부속 부설기관의 수업 및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용 비품 및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우리 대학교 기자재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각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4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사무처 구매담당자가 된다.

제3조 (임기)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학교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실험실습기자재 구비기준 등의 제개정

② 실험실습기자재 구매계획 수립

③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및 운영

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자문위원) 위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당해 업무에 정통한 교원이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7조 (사무)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처에서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